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외교부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2명(5등급·6등급 또는 5급 2명)을 증원하고,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아태지역협력과, 동북아시아국, 동북아시아국 심의관, 동북아협력과, 동남아2과 및 수출통제·제재담당관의 평가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하며, 외교부 소속기관에 공관 사건사고 전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52명(3등급 또는 4등급 52명)의 평가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「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1. 12. 00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, 현행 법령 속 일부 어려운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11. 29. ~ 12. 3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

음

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9항제9호 중 “수발”을 “접수·발송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수립·추진
및 평가 등 총괄

10의2.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·추진 및 데이
터 관리 등 총괄

제31조제6항제3호 중 “수발”을 “접수·발송”으로 한다.

제32조제6항제6호 중 “시청각교육기재”를 “시청각 교육용 기구 및 재료”로 한다.

별표 1 중 총계 “969”를 “971”로 하고, 1. 공무원(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) “965”를 “967”로 하며, 외무공무원 계 “719”를 “721”로 하고, 5등급·6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또는 전산사무관 “2”를 “4”로 한다.

별표 1의2 중 총계 “976”을 “978”로 하고, 1. 공무원(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) “972”를 “974”로 하며, 외무공무원 계 “725”를 “727”로 하고, 5등급·6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또는 전산사무관 “2”를 “4”로

한다.

별표 5 제1호 3)부터 8)까지의 평가기간란 중 “2021년 12월 31일”을 각각 “2023년 12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표 제2호1) 및 2)의 평가기간란 중 “2021년 12월 31일”을 각각 “2022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기획조정실장) ① ~ ⑧ (생략)	제8조(기획조정실장) ① ~ ⑧ (현행과 같음)
⑨ 운영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.	⑨ ----- ----- ---
1. ~ 8. (생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9. 문서의 분류· <u>수발</u> ·관리 및 통제	9. ---- 분류· <u>접수</u> · <u>발송</u> ----
10. ~ 12. (생략)	10. ~ 12. (현행과 같음)
⑩·⑪ (생략)	⑩·⑪ (현행과 같음)
⑫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.	⑫ ----- ----- --.
1. ~ 9. (생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10. <u>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</u>	10. <u>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·추진 및 평가 등 총괄</u>
<u><신 설></u>	10의2. <u>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·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</u>
11. ~ 14. (생략)	11. ~ 14. (현행과 같음)
⑬ ~ ⑮ (생략)	⑬ ~ ⑮ (현행과 같음)
제31조(기획부) ① ~ ⑤ (생략)	제31조(기획부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· 2. (생 략) 3. 인사 및 문서의 <u>수발</u> 및 통제 4. ~ 8. (생 략) 제32조(교수부) ① ~ ⑤ (생 략) ⑥ 외국어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5. (생 략) 6. <u>시청각교육기재</u>의 관리 및 교재 편찬	⑥ ----- -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<u>접수·발송</u> ----- ----- 4. ~ 8. (현행과 같음) 제32조(교수부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<u>시청각 교육용 기구 및 재료</u> -----
---	---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1]

외교부 공무원 정원표(제34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969	971	+2
1			
공무원(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)	965	967	+2
외무공무원 계	719	721	+2
5 등 급 · 6 등 급			
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또는 전산사무관	2	4	+2

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1의2]

외교부 공무원 정원표(제34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976	978	+2
1 공무원(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)	972	974	+2
외무공무원 계	725	727	+2
5 등 급 · 6 등 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또는 전산사무관	2	4	+2